업무지침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2022. 5.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자격신고 1

1. 개 요 1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3
3.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5

Ⅱ. 보수교육 6

1. 개 요 6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7
3.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13
4. 행정처분 15
5.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15

Ⅲ. 참고서식 19

Ⅰ 자격신고

1 개 요

가. 추진 배경

○ 응급구조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 및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시행('17.5.30.)

다.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자격신고 수리 업무 관련 위탁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 3(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가. 자격신고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해당 업무 미종사자'도 신고 대상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

(1) '17.5.29.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7. 5. 30.부터 '18. 5. 29.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7.5.30.~'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1.1.~'20.12.31.에 재신고
- ('18.1.1.~'18.5.29.)에 신고하였으면, '21.1.1.~'21.12.31.에 재신고

○ '17.5.29.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7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6년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9년도에 최초로 신고한 다면,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실태 등 신고

(2) '17.5.30. 이후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그룹명	자격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7.5.30~2017.12.31	2020	2023
3B	2018.1. 1 ~ 2018.12.31	2021	2024
3C	2019.1. 1 ~ 2019.12.31	2022	2025
≀	≀	≀	≀
산식	X	(X+3)	(X+6)

* 자격을 '17.6.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 본인의 자격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lic.mohw.go.kr)

다.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 2서식)

* "연락처" 중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1가지 이상 반드시 작성하고, "E-mail"주소는 선택 입력 사항

라. 신고방법 및 절차

(1)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

【첨부서류】 직전 3개년도 보수교육 이수증(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4호의2서식)
- 2022년에 신고하는 경우 2019, 2020, 2021년도 보수교육 관련 증빙자료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응급구조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

**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자격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

(2)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반려' 결정 통지

【신고요건】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연간 4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외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 근무이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두 해당

○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확인

○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다만, 불가피한 경우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음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 발송 비용은 협회가 부담

3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가.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2항)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자격 효력 정지

나.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이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자격 회복 절차】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	협회	신고 보고 ⇨	복지부	회복 통보 ⇨	관계기관, 민원인

4 자격신고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자격신고 수리 거부 절대 금지

○ 자격 신고는 응급의료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고요건(보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 거부 불가**

Ⅱ 보수교육

1 개요

가. 추진 목적

○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응급의료기술 및 업무지침, 관련 법률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함.

나. 추진 경과

○ '95. 1. 7.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실시근거 및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2. 5.14. :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규정 마련

○ '16. 5.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격신고제 도입('17.5.30.시행)

다. 법적 근거

응급의료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 보수교육 업무 주관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당해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한 사람은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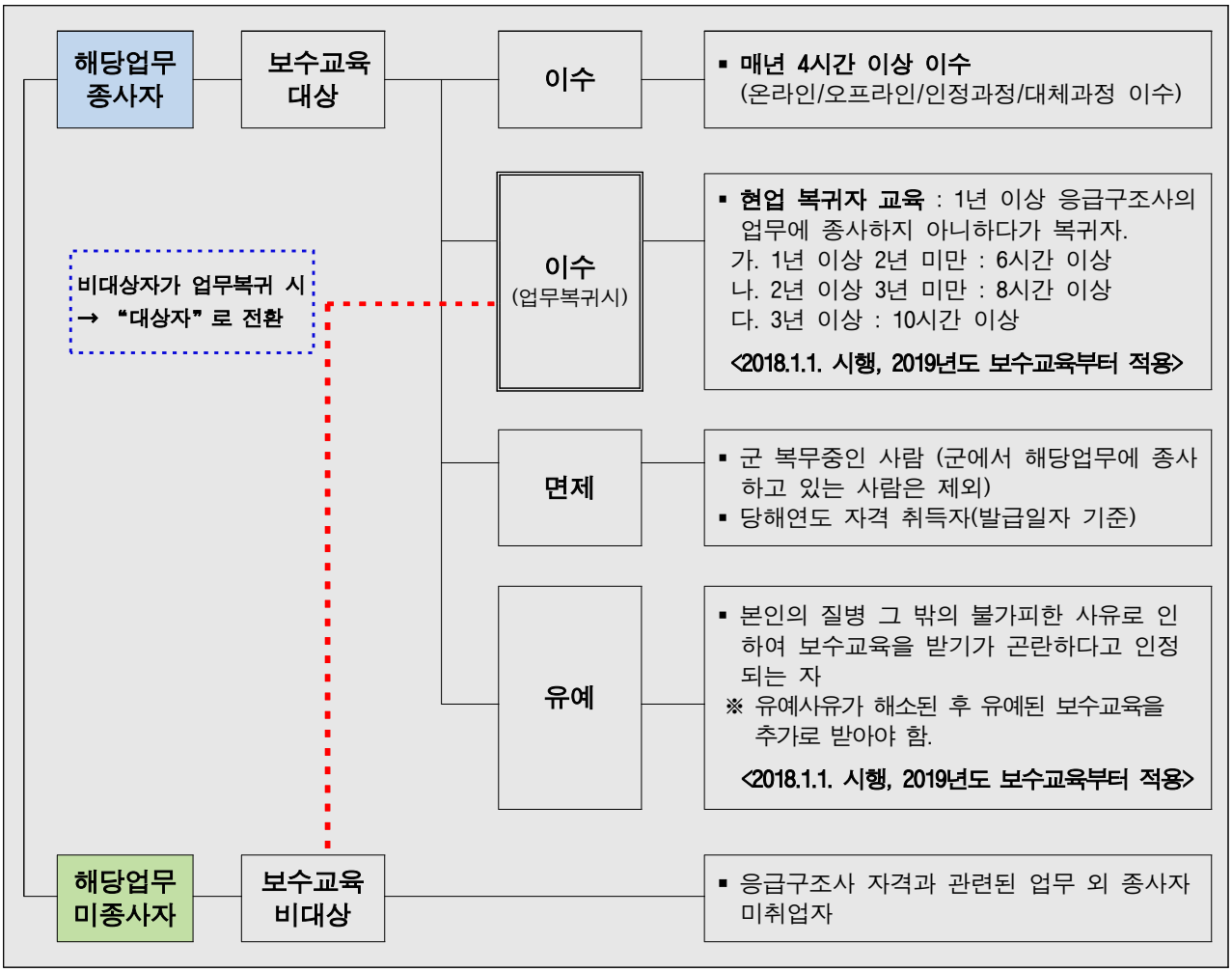

○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와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조)

- 다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17.5.30.부터 적용)

○ 자격 취소된 자는 응급구조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나. 보수교육 면제 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 중인 자(해당자격 종사자는 제외)

* 군 의무복무(현역병, 전환복무자, 보충역 등) 중인 사람을 일컬음

▪ 군 복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군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6개월 미만이면 보수교육 이수

(예) 군 의무복무(현역병, 전환복무자, 보충역 등 포함)으로 ‘20.11월 입대 후 ‘22.8월에 제대한 경우, ‘20년 보수교육 이수, ‘21년 보수교육 면제‘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례】

○ 본인의 질병으로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로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소방관서 등에서 당해 연도에 8개월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응급구조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변경된 자로서 당해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당해 연도에 1일이상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유예는 예외적인 경우 한해서 검토 가능**

(4)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 받거나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분	대 상 자	증빙서류
면제	1.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현역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군 복무사실 및 기간 확인 가능서류
	2. 당해연도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유예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직무분야, 휴직기간 명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원치료기간 명시)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응급구조사는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4의 2호 서식)"를 **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5일 안에 처리하여 교부**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 당해 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1일도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6) 보수교육 비대상 인정절차

○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인정절차는 상기 (4)항과 동일)

-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5일 안에 처리하여야 함

【비대상자 증빙서류 예시】

○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업무에 미취업 중인 것이 확인 가능한 서류

○ 타 직종 재직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함' 을 명기하여야 함)

○ 해외 체류자 : 출입국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보수교육 비대상자 여부는 『자격신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비대상자 신청은 다음해 1월부터 가능 (2021년도 비대상자인 경우 2022년에 신청)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4시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 **보수교육을 일부만(4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

○ 당해 연도에 **전년도 미이수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4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20년에 이수, '21년 미이수, '22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21년 미이수 보수교육 4시간 +'22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4시간 **초과**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4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미종사 기간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예) '21년 미종사자, '22년도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현업복귀자교육 2시간(협회 온라인과정) + '22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3) 보수교육 유예자 보충교육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21년 유예자, '22년도에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21년 보충교육 4시간(협회 온라인과정) + '22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마. 보수교육 내용

(1) 직업윤리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그 밖에 (1)목부터 (3)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5)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운영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실시

3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가. 보수교육 비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 간에 동일* 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

보수교육 직접비 산출

■ 각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 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1시간당 간접비 * 4시간 ≦ 협회비)

■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참여율
전담 인력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월 급여 * 20% 이내

○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보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게시사항 안내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

- ■ 보수교육비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
- ■ 보수교육비 환불 조건 및 기준 명시
- ■ 연중 보수교육 계획 및 상세 일정 등

나. 회계처리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협회 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

-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보수교육 수입으로 계상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보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사용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

다. 기타 수수료 관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책정 및 부과 금지**

4 행정 처분

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

- 1차 위반 : 시정명령
- 2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 3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나. 자격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 정지

5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1) 보수교육 계획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교육 예산 등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

(2) 보수교육 실적 보고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

○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면허(자격)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리

나. 보수교육 이수증 등 각종 서식 발급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및 비대상 확인서 발급

- 응급구조사는 자격신고 시, 「면허(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및 비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설계 (※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다. 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관계서류】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명시)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협조 요청

○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협회는 지회 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중앙회 지부 필수과목 지정,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 운영

- 회원 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 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

○ 문의사항 안내 관련

-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내 직통 콜센터(1588-1339) 운영**
- **자격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안내**

* 각종 홍보물에 협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주요 기관 및 문의처]

민원 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접수	대한 응급구조사 협회	전화	1588-1339 내선 1번
		홈페이지	www.emt.or.kr
		이메일	anm1214@emt.or.kr
		주소	(우 28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9 (응급의료종사자 전문교육원) 101호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신규 자격증 발급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화	1544-4244 (콜센터)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주소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자격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전화	129 (보건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www.mohw.go.kr (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Ⅲ 참고서식

1.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

3.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1.>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제 호
주소			
소속기관			
기관 소재지			

귀하는 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명) [인]

210㎜× 297㎜[백상지 80g/㎡]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12. 1.>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 ] 면제확인 [ ] 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제 호
	소속기관	
	기관소재지	
신청사유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면제사유 [ ] 군 복무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 신청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유예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처 리 기 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처 리 기 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7. 5. 30.>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table>
<tr><td rowspan="5">기본
인적사항</td><td colspan="2">성 명 (한 글)</td><td>성별 남 / 여</td><td>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주소</td><td colspan="2">E-mail</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일반전화</td><td colspan="2">휴대전화</td></tr>
<tr><td colspan="2">자격등급</td><td colspan="2">자격번호</td></tr>
<tr><td colspan="4">자격증 발급 연월일</td></tr>
<tr><td rowspan="9">실태·
취업상황</td><td colspan="4">취업 여부
[ ] 취업 ([ ]정규, [ ]비정규) [ ] 미취업</td></tr>
<tr><td rowspan="6">취업</td><td rowspan="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td><td colspan="2">[ ] 법무부 [ ] 국방부 [ ] 산림청 [ ] 소방관련 기관 [ ]해양경비 관련 기관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그 밖의 기관</td></tr>
<tr><td colspan="2">근무 기관 명칭/주소</td></tr>
<tr><td rowspan="2">의료기관</td><td colspan="2">[ ] 의원 [ ] 치과의원 [ ] 한의원 [ ] 조산원
[ ] 병원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요양병원
[ ] 종합병원 [ ] 그 밖의 병원</td></tr>
<tr><td colspan="2">근무 기관 명칭/주소</td></tr>
<tr><td>응급환자
이송업체</td><td colspan="2">근무 기관 명칭/주소</td></tr>
<tr><td>비영리법인</td><td colspan="2">근무 기관 명칭/주소</td></tr>
<tr><td>그 밖의
기관·단체</td><td colspan="2">근무 기관 명칭/주소</td></tr>
<tr><td>미취업</td><td colspan="3">미취업 사유
[ ] 일시적 폐업·실직 [ ] 출산·육아 [ ] 질병·사고 등
[ ] 해외 체류 [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없는 업무 종사
[ ] 그 밖의 사유( )</td></tr>
<tr><td colspan="4">향후 3년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 복귀 의사 없음 [ ]</td></tr>
<tr><td rowspan="3">보수교육 및
신고관련</td><td colspan="4">최근 신고 연도</td></tr>
<tr><td colspan="4">보수교육 대상 여부 [ ] 이수 [ ] 면제</td></tr>
<tr><td colspan="4">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td></tr>
</tab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증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근무 기관 명칭"란 및 "근무 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4. 자격증과 관련이 없는 곳에 취업한 경우에는 “미취업”란에 표시합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